

1. 동물용의약품등 요건확인 세부요령

통합공고중 개정고시(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86호 : 93. 10. 4)에 의한 원료 및 완제 동물용의약품의 요건확인 세부요령이 공고되었다.

가. 공고명

- ① 원료 동물용의약품  
-한국동물약품협회공고 제94-1호(94. 1. 23)
- ② 완제 동물용의약품  
-농림수산부 공고 제1994-5호(94. 1. 15)

나. 완제품 요건확인세부요령중 주요내용

-국가검정 완제 동물용의약품 수입요령중 시공품 발체요령이 변경되어 「국가검정 동물약품 발체 의뢰서(별규)」 2부를 국립검역소장(지소장 포함)에게 제출하여 1부는 검정 시료 발체후 검역관의 확인을 받아 시공품과 함께 가축위생연구소에 검정 신청토록 조치

2. 통합공고중 개정고시

통합공고중 개정고시(상공자원부 고시 제1994-2호 : 94. 1. 8)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요건확인 세부요령을 농림수산부에 승인 중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품목번호	품 목	수입요령
2309 90 3020	•비타민을 주로 한 것	동물용의약품의 것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030	•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	
9000	•기타	

3. 국가검정 동물약품 국가검정 면제

국가검정 동물약품 검정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제품 제조를 위하여 제조된 원료 항생제가 국가검정이 면제되었다.

일 자	업 체 명	제 품 명
94. 1. 14	(주)종근당	종근당동물용염산테트라사이클린
94. 2. 23	동화약품공업(주)	동화암피실린(경구용)

4.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대표자 변경

업 체 명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천세산업(주)	김성모	이충구	94. 2. 2
(주)고려케미칼	원태희	김진구	94. 2. 5

5.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신규 확인

일 자	업 체 명	대표자
94. 1. 18	(주)한성약품	유상연
94. 1. 29	중앙가축진염병연구소	윤지병

6. 동물용의약품 수입자 대표자 변경

업 체 명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주)동원신약	계봉구	조병곤	94. 1. 24
(주)고려케미칼	원태희	김진구	94. 2. 5

7. 동물용의약품중 일반제제 유효기간 지정

농림수산부에서 항생·항균제제를 제외한 영양제등 일반제제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제품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조정 필요한 경우는 안전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 품목허가를 변경토 조치하였다.

- 다 음 -

구 분	유효 기 간
비타민	1년6개월(액제는 1년)
미네랄제	2년(액제는 1년)
아미노산제	2년(액제는 1년)
구충제	2년
소독제	2년
효모·효소제	1년(생균제제는 추후 조치)
살충제	2년
기타 일반제제	2년(호르몬제제 제외)

- 1) 사료첨가용 프리믹스 제품은 1년
- 2) 제조업체에서는 자가 시험성적 등을 상기 유효기간 이내 표시
- 3) 제조 품목허가증에 유효기간이 명시된 제품은 허가증의 유효기간 표시

8. 배합사료제조동물약품 첨가사용 잠정조치

농림수산부에서 배합사료 및 양축농가의 반응을 조사하고 유효성 확인을 위하여 닭콕시독 예방약을 첨가기준 개정 고시전까지 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일 자	DICLAZURIL	병아리	육 계 용			
			전기	중기	후기 I	후기 II
94. 1. 18		1	1	1	1	-

9. 생물학적제제 국가검정 신청시 통일명칭 사용 조치

가축위생연구소는 생물학적제제 국가검정 신청시 효율적인 전산 처리를 위하여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공시한 통일 명칭을 사용하고 업체별 제품명은 괄호안에 부기토록 하였다.

10. 94년 유당 수입 한도량 배정

94년도 동물약품 제조용 유당 수입량이 1,000톤으로 배정 되었으며 식품 제조용 5,672톤, 인산제품 제조용 223톤, 조제분유 제조용 3,162톤, 의약품 제조용 4,700톤이 배정되었다.

11.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허가

일 자	업 체 명	대표자	허가번호
94. 2. 22	유한화학공업(주)	홍순옥	제81호
소재지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59-3		

12. 94년도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 검정신청 예정량 조사

가축위생연구소의 요청에 의하여 94년도 국가검정 신청 예정량을 조사하여 제출하였다.

항생물질제제	생물학적제제	계
2,841건	918건	3,759건

13. 동물용의약품 품목정비 사업

품목정비 자료 제출 시한을 연장하고 품목 정비에 대한 업체 이해 증진을 위하여 가상 부표를 작성, 가축위생연구소의 감수를 받아

업체에 시달하였다.

• 품목 정비자료 제출 시한

구 분	항생물질제제	화학요법제	기 타
제출 시한	94년 2월 28일	94년 3월 31일	94년 4월 30일

14. 생물학적제제 특별관리 방안

가. 생물학적제제 특별관리 최종방안 제출

- 1) 일 시 : 94년 2월 21일
- 2) 제출처 :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

2) 내 용

가) 상표 특별관리 방안

① 국가검정 합격표시 : 고딕체로 전면상단 표시

-국가검정 품 : 국 가 검 정 필

-국가검정 면제품 : 국 검 면 제

② 제작 및 관리

-업체별로 개별적으로 제작

-「동물약품관리요원」 해봉 입회시 「상표관리대장」 및 상표 구입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확인

나) 알루미늄 캡 특별관리 방안

① 제작 및 관리

-협회에서 지정한 제작업소에서 은색, 금색, 청색의 알루미늄캡에 특정 비표를 삽입하여 「동물약품 관리요원」 입회하여 제작

-분기별 사용량을 제작하여 업체별로 분출하고 제조관리자 책임하에 보관, 사용하고 「캡 관리대장」 작성, 비치

-「동물약품 관리요원」 해봉 입회시 「캡 관리대장」과 캡의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확인

③ 조치사항

-93년 12월말 이전 밀봉 작업이 완료된 제품과 94년 제작 예정인 제품중 기존 잔여캡이 희석액이나 주사제에 전용이 불가한 제품에 대하여는 협회에서 제작한 증지를 부착하도록 조치